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2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은행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11. 4.

판 결 선 고 2015. 1. 6.

주 문

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6,826,760원, 농어촌특별세 5,682,650원, 등록세 57,191,900원, 지방교육세 10,626,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가. [redacted]협동조합중앙회(2012. 3. 2. 분할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redacted]협동조합중앙회도 '원고'라고 한다)는 집합투자업자인 [redacted] 자산운용 주식회사와의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redacted]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를 수탁·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이다.

나. 원고는 위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2010. 7. 7. 주식회사 [redacted]몰(이하 '[redacted]몰'이라고 한다)과 [redacted]몰이 건축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금원 합계 18,318,404,902원(부가가치세 1,095,869,902원 포함)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7. 킨텍스몰에 잔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17,564,928,000원(= 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 17,222,535,000원 + 법률자문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342,3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565,590,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라고 한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redacted]가 기설치한 시설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공사비용인 '별지 3' 목록 기재 공사비용 합계 2,993,877,272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9. 그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58,709,310원, 농어촌특별세 5,870,910원, 등록세 59,086,54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지방교육세 10,979,010원 등 합계 134,645,7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대한 설치비 9,000,000원('별지 3' 목록 중 연번 18번),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에 대한 공사비용 합계 87,000,000원('별지 3' 목록 중 연번 4, 14, 40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 3' 목록 중 연번 4, 14, 18, 40번 부분을 제외한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1. 28. 위 2012. 8. 9.자 처분을 취득세 56,826,760원, 농어촌특별세 5,682,650원, 등록세 57,191,900원, 지방교육세 10,626,960원 등 합계 130,328,27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된 위 2012. 8.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않을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redacted]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점까지 반영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dacted]몰은 2009. 4. 24. [redacte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318,404,90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redacted]와 공사업무를 분장하여 [redacted]몰이 [redacted]의 영화관 운영을 위한 특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을 늦어도 사용승인취득예정일(2010. 7. 30.) 4개월 이전에 완료하고, 이를 인도받은 [redacted]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영화관 운영을 위한 특수시설 공사를 하기로 특약하였다.

2) [redacted]는 위 특약에 따라 '별지 3' 인테리어 및 설치 공사내역의 '품목'란 기재 각 시설에 관하여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그 설치를 완료하였다.

3) 그런데 [redacted]몰과 [redacte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2010. 7. 2. 합의해제되면서, 원고가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2010. 7. 7. [redacted]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매매계약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대금과 같은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redacte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은 1,859,639,524원, 임대료는 월 128,625,066원(단, 계약체결일부터 [redacted]의 영업개시일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의 직전일까지는 1일 1,227,946원),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redacted]의 영화관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를 허용하되 기간 종료시 원상회복된 상태로 인도받기로 특약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임대차목적물의 공사 등)

① 임차인([redacted]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분양사업자([redacted]몰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접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분양사업자와 별도로 합의한 공사업무 분장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임차인의 공사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부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임대인(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떠한 대가 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인도 및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목적물을 어떠한 청소, 수선, 철거의 노력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해당 용도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후속 임차인에게 즉시 임대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는 본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4) [redacted]몰은 2010. 8.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을 완료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신탁등기 등을 거쳐 2010.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취득일자와 등기이전일자가 동일한 이 사건의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취득의 예로 '매매', '건축' 등을 들고 있고, 제105조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을 정하면서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을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그 가액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건축행위 없이 단지 매매를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7. 7. [redacted]몰이 건축할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38,404,902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redacted]몰이 2010.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완공하자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9. 7.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설령 매매를 원인으로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법 105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의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시설은 영화관으로 설계·건축되어 영화관으로 사용될 이 사건 부동산의 벽체, 바닥 등의 마감 부분이거나 음향시설 등으로서 이를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이를 분리할 경우 영화관의 효용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 4항, 제82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그 비용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 제3자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건축물), 제10호(개수)에 따라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7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redacted]몰이 2010. 8. 9.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시설은 메가박스가 사용승인일인 2010. 8. 9.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 중 사용승인일 이전에 완성된 기성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 의하여 [redacted]몰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redacted]몰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성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한 것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이외에 위 기성 부분에 대한 가액 상당액에 대해서까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완성된 기성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시설들이 위 규정이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3) 따라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시설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효[redacted]

판사 [redacted]승[redacted]

판사 [redacted]병[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별지 1] 분양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2602 소재 복합건축물 [redacted]몰 ([redacted])
건물	전유면적	5,448㎡
	공용면적	3,366㎡
	주차장면적	3,838㎡
	분양면적 (전유+공용 +주차장)	12,652㎡
대지지분		1,723㎡
위치(전유면적)		지하 5층 일부, 지상 3층, 지상 4층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영화관)
사용승인일		2010년 8월 9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별지 2] 분양대금

1. 총 공급금액

건물	건물금액	금일백구억오천팔백육십구만구천이십원 (₩10,958,699,020)
건물	부가가치세	금일십억구천오백팔십육만구천구백이원 (₩1,095,869,902)
대지가		금육십이억육천삼백팔십삼만오천구백팔십원 (₩6,263,835,980)
합계		금일백팔십삼억일천팔백사십만사천구백이원 (₩18,318,404,902)

2. 회차별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구분		납부비율	납부일자	납부금액
계약금	1차	10.45%	2010년 7월 7일	금오십사억원(₩5,400,000,000)
중도금	1차	10.45%		
중도금	2차	10.45%		
잔금		68.65%	2010년 9월 7일	금일백일십팔억이천이백오십삼만오천원(₩11,822,535,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별지 3]

인테리어 및 설치 공사내역

연번	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계약일	준공일
1	2010.8.20.	[redacted]점 항공조시스템 중도금	24,600,000	2010.04.05.	2010.07.05.
2	2010.8.23.	[redacted] 객석의자 중도금	223,920,000	2010.05.24.	2010.08.15.
3	2010.8.25.	[redacted]점 전기공사	2,500,000	2010.08.05.	2010.08.10.
4	2010.8.25.	[redacted]점 UPS 중도금	52,200,000	2010.05.17.	2010.07.15.
5	2010.8.30.	[redacted] 스텝라이팅 중도금	24,000,000	2010.04.06.	2010.07.15.
6	2010.8.31.	[redacted]점 카페트 중도금	57,600,000	2010.07.15.	2010.08.31.
7	2010.9.1.	[redacted]점 [redacted]재 잔금	9,490,000	-	-
8	2010.9.2.	[redacted]점 VIP관객석의자(리클라이너)잔금	19,930,909	2010.05.13.	2010.08.02.
9	〃	[redacted]점 VIP관 리클라이너창고료 추가분	454,545	2010.05.13.	2010.08.02.
10	2010.9.9.	[redacted]점 항공조공사 잔금	12,300,000	2010.04.05.	2010.07.05.
11	〃	[redacted]점 스텝라이팅 잔금	12,000,000	2010.04.06.	2010.07.15.
12	〃	[redacted]점 음향컨설팅 중도금	7,200,000	2010.02.05.	개관일까지
13	〃	[redacted]점 음향컨설팅 잔금	3,600,000	2010.02.05.	개관일까지
14	〃	[redacted]점 UPS 잔금	26,100,000	2010.05.17.	2010.07.15.
15	〃	[redacted]점 부속실 공사 잔금	94,500,000	2010.04.08.	2010.07.05.
16	〃	[redacted]점 카페트 잔금	28,800,000	2010.07.15.	2010.08.31.
17	〃	[redacted]점 도어 잔금	17,100,000	2010.02.23.	2010.06.05.
18	〃	[redacted]점 LED전광판 설치비	9,000,000	2010.08.15.	2010.09.26.
19	〃	[redacted]점 도어하드웨어 중도금 및 잔금	24,300,000	2010.04.05.	2010.06.30.
20	〃	[redacted]점 주차유도시스템 공사금액	58,560,000	2010.05.05.	2010.08.15.
21	〃	[redacted]점 인테리어 공사비 잔금	495,000,000	2010.06.30.	2010.08.20.
22	〃	[redacted]점 객석의자 잔금	111,960,000	2010.05.24.	2010.08.15.
23	〃	[redacted]점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대체	15,200,000	2008.10.17.	개관일까지
24	〃	[redacted]점 건축설계 기성1차	45,600,000	2008.10.17.	개관일까지
25	〃	[redacted]점 건축설계 기성2차	45,600,000	2008.10.17.	개관일까지
26	〃	[redacted]점 도어 선급금	4,700,000	2010.02.23.	2010.06.05.
27	〃	[redacted]점 도어 중도금	4,700,000	2010.02.23.	2010.06.05.
28	〃	[redacted]점 도어 2차중도금	23,500,000	2010.02.23.	2010.06.05.
29	〃	[redacted]점 M관음향컨설팅 선급금	1,200,000	2010.02.05.	개관일까지
30	〃	[redacted]점 도어하드웨어 선급금	2,700,000	2010.04.05.	2010.06.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31	〃	[redacted]점 항공조설비 선급금	4,100,000	2010.04.05.	2010.07.05.
32	〃	[redacted]점 천정인테리어 선급금	6,300,000	-	-
33	〃	[redacted]점 천정인테리어 기성금	18,900,000	-	-
34	〃	[redacted]점 천정인테리어 잔금	37,800,000	-	-
35	〃	[redacted]점 인테리어공사 선급금	165,000,000	2010.06.30.	2010.08.20.
36	〃	[redacted]점 인테리어공사 1차기성	495,000,000	2010.06.30.	2010.08.20.
37	〃	[redacted]점 인테리어공사 2차기성	495,000,000	2010.06.30.	2010.08.20.
38	〃	[redacted]점 부속실마감공사 선급금	10,500,000	2010.04.08.	2010.07.05.
39	〃	[redacted]점 스텝라이팅 선급금	4,000,000	2010.04.06.	2010.07.05.
40	〃	[redacted]점 UPS선급금	8,700,000	2010.05.17.	2010.07.15.
41	〃	[redacted]점 8관전동의자 선급금	8,541,818	2010.05.13.	2010.08.02.
42	〃	[redacted]점 객석의자 선급금	37,320,000	2010.05.24.	2010.8.15.
43	〃	[redacted]점 비계공사 선급금	19,500,000	-	-
44	〃	[redacted]점 비계공사 잔금	45,500,000	-	-
45	〃	[redacted]점 인테리어공사 적산비	4,500,000	-	-
46	〃	[redacted]점 카페트 선급금	9,600,000	2010.07.15.	2010.08.31.
47	〃	[redacted]점 흡음재 선급금	26,600,000	-	-
48	〃	[redacted]점 흡음재 중도금	93,100,000	-	-
49	2010.9.15.	[redacted]점 설계비 잔금	45,600,000	2008.10.17.	개관일까지
합계			2,993,877,27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별지 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법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2.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08

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끝.